제9조제1항제1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·군관리계획"으로, "도시계획사업시행자"를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제16조제3항 본문 중 "정한다."를 "정하되,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·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 시장·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소도읍(地方小都邑)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·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,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,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·도지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, 앞으로는 관할 시장·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3년 5월 22일

국무총리 정 홍 원

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 정 복

◉법률 제11784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)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3년 5월 22일

국 무 총 리 정 홍 원

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유 진 룡

◉법률 제11785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부"를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"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등급"을 "관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(이하 "등급위원회"라 한다)"를 "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등급위원회"를 각각 "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"등급위원회"를 각각 "위원회"로 한다.